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한국노총 기후위기 대응 표준단협 지침

요 약

□ 개 요

- 길어지는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자연현상이 아닌 이미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는 야외 노동의 위험성을 높이고, 설비 고장이 증가하는 등 노동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한국노총은 심화 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회원조합(지역)·단위노동조합 별로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 지침 및 단체협약을 제시하고자 함.

□ 원칙과 활동 방향

- 중앙: 기후위기·산업전환에 대응하는 노동중심 탄소중립 거버넌스 확보, 산업전환 시 노동자 고용보장 활동 등
- 산업별·지역별: 의제별 및 관할 범위에 따른 거버넌스 구축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동참, 지역별 기후대응기금 조성 촉구 등
- 사업장별(단위노동조합): ‘녹색 단체협약’ 체결로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대응
 -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및 작업중지권 확보: 폭서기·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중지 보장, 기후실업급여 도입 등

□ 기후위기(녹색) 모범 단체협약 안

- 작업중단권 및 작업 중단시 유급휴가 보장
- 작업이 불가피한 자연재해 기준 마련
- 산업전환시 노동조합과 사전 정보 공유
- 일방적인 정리해고, 희망퇴직 금지
- 보상, 교육, 재훈련 프로그램 마련
- 기후위기(녹색) 담당자 선정 : 상집, 대의원 등
- 저탄소데이 운영 및 일회용품 줄이기 등 탄소중립 실천
- 대중교통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시 지원대책 마련
- 노사공동 ESG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1. 왜 노동조합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가?(목적 및 취지)

- 길어지는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자연현상이 아닌 이미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는 야외 노동의 위험성을 높이고, 설비 고장이 증가하는 등 노동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침. 따라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비한 안전지침을 마련해 생존권을 확보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생산방식과 노동조건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동현장의 대응은 온도 차가 큰 상황임. 폐쇄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 생산이 축소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 이미 큰 위기에 직면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반면에 별다른 변화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있음.
- 하지만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멸하는 산업과 더불어 고용 위기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이 우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녹색 단체협약’을 들 수 있음. 이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나뉘 볼 수 있음.

▶ 기후위기 → 노동자 : 기후위기로부터 노동자 보호

-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및 작업중지권 : 혹서기·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 중지 보장, 기후실업급여 도입 등
- 산업전환 시 총고용 보장 및 교육훈련 과정 마련 등

▶ 노동자 → 기후위기 : 일터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활동으로 기후변화 완화

- 저탄소데이 운영,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등

- 녹색 단협에 대한 명시와 활용은 2015년 파리협정이 대표적이며,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 합의임.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파리협정을 발효하고, 2017년에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탄소 배출을 24.4% 감축하겠다고 발표.
- 한국노총은 기후위기 대응 활동으로 최근 몇 년간 ‘공동임단투지침’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 시 요구되는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음. 2024년 4월에는 모든 회원조합이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에 함께 대응하고자 각 회원조합에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한국노총 기후위기 대응팀’을 구성함.
-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팀’에서는 심화 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회원조합(지역)·단위노동조합 별로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 지침 및 단체협약을 제시하고자 함.

2. 원칙과 활동 방향

1) 중앙

(1) 기후위기·산업전환에 대응하는 **노동중심 탄소중립 거버넌스** 확보

○ 중앙단위 거버넌스 구성으로 정책적 개입 강화

- 현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 : 노동계 위원 배정 촉구

(2)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 시 **노동자 고용보장** 활동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4월 25일부터 시행

-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 대표의 참여 확대 요구(노사 대표 동수참여), 정례화 및 실질적 의견반영 절차 마련 촉구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및 대국민 소통 기틀 마련

○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 9월 기후정의행진 참여

<기후정의행진>

- ▶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운동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된 연대기구인 기후정의행동은 2022년 924기후정의행진을 개최했고, 2023년 414 기후정의파업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기후행동을 진행해왔으며, 2023년 9월에도 기후정의행동을 통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함.
- ▶ 한국노총은 2023년 조직위원으로 참여, 500여명의 산별 지역 간부들과 함께 923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바 있음.

2) 산업별·지역별

(1) 산업별

○ 기업별 노사관계를 넘어 노조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 의제별(산업·노동·사회·지역정책) 및 관할 범위(전국, 지역, 산업·업종, 기업)에 따른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

○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에 직면한 석탄화력발전소, 내연기관차 생산이 축소되는 자동차산업, 철강, 조선 산업 등에서 선도적인 활동 진행

- 금속노련은 가맹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업종 이외에도 철강, 조선 등의 업종에서 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현황을 공유하며 협의 진행
- 전력연맹은 전력산업·노동·환경분야 유관 상임위 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주요 발의된 관련 법안 및 사회적 논란과 쟁점이 되는 현안에 대해 연맹의 명확한 입장 전달

(2) 지역별

○ 지역별 기후대응기금 조성 촉구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 노동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 예 : 경기도 기후대응기금('24년 241억원 조성, '28년까지 1,205억원 이상 조성 목표)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지역 단위 거버넌스 구축 예시

- 충남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 및 노동전환 지원기반 마련’ 공동선언문(2024.3.28)

< 충남 노사민정 탄소중립 실현 공동선언문 >

1. 노사는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의 실질적 구현을 통해 미래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과 선제적인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한다.
2. 노동단체는 조합원 교육을 통한 탄소중립의 필요성 인식을 강화하고, 일회용품 미사용 등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참여한다.
3. 사용자단체는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 인식강화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형 신기술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4. 민간단체는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홍보활동 등을 중점 펼치고, 도와 중앙행정기관은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시행 2022.10.18] :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규정
-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08.10] :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계획 등 규정

3) 사업장별(단위노동조합)

- ‘녹색 단체협약’ 체결로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대응
- 노조 자체적인 전환 전략 수립 및 실천
-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이·전직, 교육훈련 서비스 등 기후위기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관련 사항에 대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도록 단체협약 범위 확장 및 체결

<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합의서 >

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 등 공동 노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노사는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구성은 사내하청·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를 포함한다.
2. 노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전환에 따른 정보 공유 및 고용 문제 발생여부 지속 점검, 대응책을 논의한다. 다음을 포함하여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교육훈련 서비스 등 기후위기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 작업 인원, 조직, 방식과 근무 시간, 형태 등 고용 및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신기술의 도입 또는 새로운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기후위기 또는 천재지변, 전염병 등 자연환경이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및 감원 등 고

용조정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노동자의 해고에 관한 사항
- 고용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물량 및 생산방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작업조직의 변경, 배치전환 및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 합병, 분할, 영업양도, 국내외 공장 이전 및 신설, 자산매각 등 사업의 구조변동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업무의 외주화, 하도급화와 관련한 사항
- 산업전환시 원하청 동반 성장에 관련한 사항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용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노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녹색 전환기금'을 조성한다.

4. 노사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사내하청·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에 해당한다.

3. 기후위기(녹색) 모범 단체협약 안

1)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및 건강권 보장

○ 노동조합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및 환경 문제로 인한 작업중단권 보장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보장】

1. 회사는 녹색작업장 환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노조 측 환경위원의 활동과 그에 필요한 경비 및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요청하는 조사 및 대외활동을 보장한다.
3. 조합의 환경 지도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은 녹색작업장 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환경 지도정책에 반영한다.
4. 작업자 또는 목격자는 환경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나 환경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시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조합이 요청하는 환경활동의 표어, 현수막, 기타 홍보사항은 회사가 적극 검토하여 실시한다.

○ 작업이 불가피한 자연재해 기준 마련

○ 작업 중지권 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보장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 재해시 작업 중지권 보장】

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폭우, 혹서기, 혹한기, 지나친 미세먼지 등으로 외부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제반 사항을 시행한다.

1. 회사는 산업안전법에 의거해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의 작업이 불가피한 자연재해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후 관련 돌발상황을 고려한 근무시간(휴게시간, 근무시간,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
2. 회사는 기후 관련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2)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 등 변경시 고용안정 및 대체 일자리 보장

○ 산업전환시 노동조합과 사전 정보 공유

○ 일방적인 정리해고, 희망퇴직 금지

○ 보상, 교육, 재훈련 프로그램 마련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 등 변경시 고용안정 및 대체일자리 보장】

회사는 기후위기와 기후정책을 이유로 생산부품 및 업종, 사업 등을 변경하거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시 적어도 1년 전에는 조합에 통보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현재 재직 중인 인원은 단협 제00조에 따라 정년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기후정책으로 인한 생산부품 및 업종, 사업 등을 변경할 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합의 없이 경우 일방적인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기후변화와 기후정책으로 인하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시 현재 재직 중인 인원에게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고용변동을 동반할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대체일 자리를 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보상, 교육, 재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3) 녹색작업장 환경위원회 기후담당자 선임 및 활동 보장

○ 기후위기(녹색)위원회 및 기후위기(녹색) 포럼 구성

- 노사협의회사나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용

【녹색작업장 환경위원회】

회사는 환경친화적 녹색작업장 구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내 환경관련 사항을 심의·의결·시행하기 위한 녹색작업장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녹색작업장 환경위원회는 사측(대표이사, 환경총괄책임자 외), 노조측 동수로 구성한다.
2.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공장별 실무위원회를 회사측과 노조측 동수로 구성하여 노사 어느 일방이 심의를 요청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 부의 전 사전협의 가능한 사항을 처리하여 효율적 운영을 한다.
3. 본 위원회는 작업장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의결된 사항은 쌍방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단협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5. 회사는 위원회에 결정된 환경 관련된 업무 사용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며 위원회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으로 인한 비상근 위원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6. 회사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원이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에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와 기술을 제공하고 조사를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7. 노사는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녹색작업장 환경위원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8. 노사 동의하에 녹색작업장 환경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기후위기(녹색) 담당자 선정 : 상집, 대의원 등

○ 기후교육을 위한 시간 확보

- 전 직원 필수교육에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노조와 협의
- 노사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공동으로 캠페인 활동 전개

【환경기후담당자 선임 및 활동 보장】

1. 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대응 및 산업전환 준비에 필요한 환경기후담당자를 노동조합과 합의해 선임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환경기후담당자 수행에 필요한 상근 활동,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환경기후담당자 전문성을 위해 교육시간을 연 1회 이상 보장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회사는 환경기후담당자가 회사에 개선사항을 건의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환경기후담당자의 활동을 이유로 임금, 승진, 승급 등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 사례(k노조)

제--조 [기후정의위원회의 설치]

노사는 기후위기 대응, 산업전환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후정의위원회를 둔다.

1. 기후변화에 대한 노동자 정기 교육 계획 수립
2.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실태 파악 및 공개 계획 수립
3.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 수립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전환·투자·조달 계획 수립
5. 기후변화 및 산업전환에 의한 노동자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
6.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전환을 위한 산업정책 등 대정부 요구안 수립
7. 기타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조 [기후정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기후정의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각 00명으로 노사동수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노사 동수 추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 수급자(이용자)
 2.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3. 환경·기후·에너지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 ② 기후정의위원회는 노사 대표가 선정한 각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재한다.
- ③ 기후정의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상실천 활동

○ 저탄소데이 운영 및 일회용품 줄이기 등 탄소중립 실천

○ 대중교통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시 지원대책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상실천】

1. 노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일상적 인식 확장과 공감을 위해 지구를 위한 1실천으로 사내식당 저탄소데이를 월2회 운영한다.
2. 회사는 급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로 하여 지역경제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3. 친환경컵 비치, 우리농산물 사용, 직원식의 경우 채식의 날 정하기, 생활용 일회용품 줄이기(전직원 텀블러, 손수건, 장바구니 사용 일상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공동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4. 종이 없는 친환경 사무공간 조성, 일회용품 줄이기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차량운영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지원】

1. 회사는 업무용 차량을 경차 또는 연료절감·고효율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고, 차량 공회전 자제, 차량 10부제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출퇴근시 통근수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이용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지원한다.
 - ① 통근버스,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 등), 카풀(car pool) 활용시 1인당 매월 _만원
 - ② 자전거 또는 도보 1인당 매월 _만원

○ 사례(k노조)

제--조 [기후정의 녹색협약]

- ① 회사는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 지열설비 등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시설·설비를 개선한다.
- ② 노사는 회사 내 작업장, 사무실, 화장실, 탕비실, 사내식당 등 회사 내 모든 장소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③ 사내 비품 중 플라스틱과 비닐 재질용품은 재생 종이 재질로 대체한다.
- ④ 회사는 업무용 법인차량(노조 제공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고, 사내 주차장에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확충하며, 업무에 따른 출장 및 이동시 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 ⑤ 회사는 사내식당 주·부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지역 생산물로 대체한다.

5) 기업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ESG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

○ 노사공동 ESG위원회 설치 의무화

【기업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회사와 노동조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다하고,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쓰레기 분리배출, 폐지 및 폐기물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춰 환경보존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실천한다. 또한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활동을 멈추도록 ESG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노동조합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1. ESG 전략 수립 및 감독 조직으로서 기업이 사내 설치한 ESG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하여 노동자 대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사공동 ESG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한다.
 - 지속가능보고서(ESG경영보고서)를 노사가 함께 작성하고 ESG 평가에 공동 대응한다
 -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ESG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강구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생산 시설과 공정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한다.
3. 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를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우리(국내산) 농·축·수산물 등을 사용한다.
4. 구내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집기 또는 제조부품은 환경마크가 붙은 제품,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 재활용 제품을 사용한다.
5. 적정 실내온도 유지로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을 절약하고, 고효율 조명등 사용, 저층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 불필요한 전등 소등,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는 플러그를 뽑는 등 불필요한 전력사용을 절제한다.
6. 구내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절수형 샤워기·양변기로 대체하고, 빗물 활용 시설을 갖춰 수도물을 절약한다.
7. 이면지 활용, 일회용품 대신 개인 컵 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폐지 및 폐기물을 재활용한다.
8. 작업장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고 이를 사용한다.